

① 제안이유

- 내규 제·개정 사전예고제를 확대하여 내규개정 투명성 확보 및 국권위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에 부응하기 위함
 - * 국권위 평가지표 : 모든 내규 사전예고 실시 및 예고 예외조항 제거

② 현황

- 현, 규정상 사전예고 대상내규는 공단 125개 내규 중 24개로 운영되고 있으며, 사전예고 예외 조항도 존재
 - * 사전예고 대상 : 임직원 행동강령, 총사업비관리세부지침 등 24개 내규
 - * 예고 예외 규정 :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거나, 긴급을 요하는 등 5가지 경우

③ 주요골자

- 국권위 반부패 정책에 부응해 공단의 『모든』 내규 제·개정시 '사전예고'를 실시하고, 『예외 조항』 삭제
 - 단,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는 예고 기간만을 단축하여 내규 제·개정
- * 제 19조의2(사전예고) ③사전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며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예고할 수 있다.
- '별표' 상 종전의 예고대상도 본문 개정에 맞게 개정

④ 그간의 진행경과

- '15. 9. 8 ~ 9. 16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 (전소속)
- '15. 9. 21 부패영향 평가 (감사실) * 의견없음
- '15. 9. 22 개정(안) 심사 (법무처)

[5] 향후계획

- '15. 10. 19 방침결정 (이사장)
- '15. 10. 23 개정내규 등록·시행 (법무처)

<붙임> 1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2. 『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』 개정(안) 전문 1부. 끝.